

##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들이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여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율준수”란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을 말한다.
2. “전기통신사업법령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, 고시 등에서 공정경쟁 촉진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을 말한다.
3. “자율준수 프로그램”이란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추구하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·운영하는 교육,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.

**제3조(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)** ① 기업 내에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고 이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경영방침이 천명되어야 한다.

②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임직원은 물론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이 게시물에는 자율준수 필요성에 대한 경영층의 신념과 의지 등을 포함 시켜야 한다.

- 제4조(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)** ① 기업 내에 자율준수관리자를 두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한다.
- ② 임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,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마찰을 조정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한다.
- ④ 기업 내에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다른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다면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을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.

- 제5조(자율준수 편람 제작)** ① 사업자는 임직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여 배포 또는 게시해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 편람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부과하는 제재·벌칙,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, 명백한 불법행위 유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.

- 제6조(자율준수 교육)** ① 사업자는 임직원들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신입직원들에 대한 기초교육, 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교육 내용에는 제5조의 자율준수 편람, 판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.

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의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자료관리체계 구축)** 사업자는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를 기록 또는 게시해야 하며,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내부 점검)** ① 사업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.

② 사업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혜택 부여)**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